

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

소관부서 : 교통정책과

제정 2001· 8· 6 조례 제 388호
개정 2001· 11· 28 조례 제 392호
(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)
개정 2008· 7· 25 조례 제 720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8· 3· 28 조례 제1378호
(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)
일부개정 2019· 1· 1 조례 제1464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일부개정 2023· 3· 6 조례 제1900호
(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교통안전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
2.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
3.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
4.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
5.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
6.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·강화 방안
7. 교통안전시설설치·개선대책
8.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
9. 교통안전 교육·홍보계획
10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08· 7· 25,

2018·3·28>

1.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
2.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
3. 시 교육청 1명
4.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1명
5. 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·교통관련 분야 교수 1명
6. 장애인단체 1명
7. 모범운자 1명
8. 시의원 1명
9. 운수업체 1명
10. 언론기관 2명
11. 시민단체 5명

제4조(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제5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,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,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 <개정 2023·3·6>

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,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6조(회의개최)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제7조(회의의결) ①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제8조(안건배부)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)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,

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(이하 “대책반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한다.

② 대책반은 대책반장(이하 “반장”이라 한다)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반장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,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2001·11·28, 2008·7·25, 2018·3·28, 2019·1·1, 2023·3·6>

1. 기획예산담당관

2. 행정지원과장

3. 도로관리과장

4. 도시과장

5. 경찰서 교통지도계장

6.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,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

④ 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,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.

⑤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0조(위촉장의 교부)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를 대책반의 반원으로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.

제11조(수당과 여비)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이나 반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·11·28 조례 제392호,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부칙 〈2008·7·25 조례 제720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

⑬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“건설도시국장”을 “지역개발국장”으로 한다.

⑭부터 ⑰까지 생략

부칙 〈2018·3·28 조례 제1378호,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⑪ 까지 생략

⑫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호 외 부분 중 “지역개발국장”을 “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“도시과장”을 “도시계획과장”으로 한다.

⑬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〈2019·1·1 조례 제1464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9조제3항제1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 〈2023·3·6 조례 제1900호,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〉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부터 ㉔ 까지 생략

㉕ 「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」 제5조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정책

과장”으로 하고,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교통행정과장”을 “교통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2. 행정지원과장

3. 도로관리과장

4. 도시과장

㉘ 부터 ㉚ 까지 생략